

대학시설 법적 기준의 적정성 분석 연구

A Study of Propriety Analysis on the Legal Standard of University Facilities

류 수 훈* 이 화 룡**
Ryu, Soo-Hoon Lee, Hwa-Ryong

Abstract

After the twenty-first century, the university emphasize on the role of knowledge creation facilities, and for this, various social and educational requirements are changing the environment of higher education. These change makes university that has old facilities difficult to correspond environmental chan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facilities manual of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university and to suggest amendment of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university by exploring the university educational environment and facilities plan to respond various changes.

We reviewed division of university studies, classification system of facilities, Area Standard of building and site in th provision for universit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based on studying domestic university facilities standards, space management standards, facilities condition of national/private university and doing a survey of university facilities satisfaction and propriety of facilities standard in 120 universities.

According to this study on validity and propriety of rules, we suggest amendment of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university that can respond changing higher education environment.

키워드 : 대학시설, 대학설립운영규정, 법적 기준면적, 적정성 분석

Keywords : University Facilities, Universit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Regulation, Area Standard, Propriety Analysi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세기 이후 대학은 지식 창출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요구들이 고등교육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는 대학마다 특성화와 구조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변화로 인하여 대학시설 역시 이전의 형태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현행 대학시설의 법적 기준의 근거가 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5개 계열별(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사 시설을 제시하고 있어 최근 다양한 학제 간 융합 따른 계열 구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리고 동 규정에서 기준면적으로 정하는 교사시설 역시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로만 구분되어 있어 최근 고등교육 시설에서 요구되는 지원시설, 산학협력 시설, 신기술 연구시설 등 새로운 대학시설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학내 복지시설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대학시설 기준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학시설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의 교지, 교사면적,

* Professor, Ph.D., Dept. of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 Korea

** Professor, Ph.D., Dept. of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 Korea

Corresponding Author,

Tel: 82-41-521-9340, E-mail: hlee@kongju.ac.kr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2015년도 일반연구자 지원 사업에 의해 수행된 연구 결과임

시설분류 및 학생 1인당 계열별 시설면적 기준 등의 부문에 현행 대학시설의 법적 기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변화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학시설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시설의 법적 기준을 분석하여 대학의 교지 및 교사면적, 시설분류 및 학생 1인당 계열별 시설면적 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지 및 교사, 대학·계열·전공별 보유면적 등과 같은 시설면적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 및 사회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하여 대학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범위 및 내용은 관련 분야 및 외국대학 사례조사를 참고하였으며, 대학시설 관련 전문가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2. 대학시설 기준에 관한 고찰

2.1 대학시설 기준 관련 법령 검토

1) 대학설립운영규정(1996.07~현재)과 시설기준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통령령 제15127호(1996.7. 26.)로 제정되었다. 대학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일정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특성화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대학의 교사시설은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구분되며, 각 교사 시설의 구분은 Table 1과 같다.

대학의 교사시설 면적 기준은 계열별 1인당 단위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 면적 기준은 Table 2와 같다(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3항 관련).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지 기준 면적은 학생정원이 1,000명 미만의 경우는 교사 기준 면적 이상으로 하고, 1,000명 이상의 경우 교사 기준 면적의 2배 이상으로 하고 있다(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제1항 관련). 교지는 학생정원의 규모에 따라 확보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도록 하되, 농장·연습림·약초원등 실습지는 교지면적에서 제외(령 제5조)하며, 교사 기준면적은 Table 3과 같다.

그리고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지 기준 면적은 학생정원이 1,000명 미만의 경우는 교사 기준 면적 이상으로 하

Table 1. Division of school building. (Para. 1 of Art. 4 of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university)

facilities	division	
basic educational facilities	classroom · laboratory · professor laboratory · administration office · library · student union · university headquarters and additional facilities, library must have the following facilities. 1. Reading room · periodicals room · reference room · book storage and office. 2. Reeding room that can accommodate over 20 percent of student quotas.	
supporting facilities	gymnasium · hall · computing center · practice factory · residential hall for students and additional facilities.	
research facilities	research laboratory · graduate school lab · university attachment laboratory and additional facilities.	
attached facilities	commonness	museum, professor · staff · graduate student · researcher’s house or apartment, official residence, training institute, facilities and additional facilities of industrial academic cooperation group, facilities, additional facilities and attached school of university based enterprises.
	agriculture	facilities for agriculture, animal husbandry, forestry
	engineering	facilities for engineering, aeronautics
	fisheries oceanography	facilities for fishery, fisheries processing, aquaculture
	pharmacy	facilities for pharmacy, pharmaceutical science
medical	facilities for medical science, korean medicine, dental studies, veterinary science	

Table 2. Area Standard of school building(m²)

academic category	humanity · society	natural sciences	engineer -ing	art · physical	medical
useable floor area per student	12	17	20	19	20

note: College or the same amount of university must be under seven tenths of school building area.

Table 3. Standard for school building area.(m²)

student quota	lower than 400 people	more than 400 people-less than 1000	more than 1000 people
area	more than school building area	more than standard for school building area	more than two times of standard for school building area

note

1. “student quotas” is criterion to year completion of formation
2. “building area” is in item 2 of Para, 1 of art, 1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고, 1,000명 이상의 경우 교사 기준 면적의 2배 이상으로 하고 있다(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제1항 관련). 교지는 학생정원의 규모에 따라 확보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도록 하되, 농장·연습림·약초원등 실습지는 교지면적에서 제외(령 제5조)하며, 교사기준면적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Standard for school area.(㎡)

student quota	lower than 400 people	more than 400 people -less than 1000 people	more than 1000 people
area	more than school area	more than standard for school area	more than two times of standard for school area

note

1. "student quotas" is criterion to year completion of formation
2. "building area" is in item 2 of Para, 1 of art, 1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2)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사 및 교지기준 규정 변화

대학설립운영규정은 1996년 07월 대학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1년 04월에 개정으로 교사 및 교원의 확보율 평가 기준을 종전 학생정원에서 등록된 학생수로 변경하였다.

Table 5. Establish, revision, history and main comments of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university.

date	main comments
1996.7.26	Decide needed facilities·teacher and basic properties for profit for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university.
2001.4.30	Change valuation basis of secure ratio for school building and teacher to registered students in student quota.
2004.3.5.	Classify university headquarters, student union, library to supporting facilities. Make basis for establishment of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Group and university based enterprises.
2005.3.25	building permission to vitalization of private investment for private university.
2005.10.25.	Merge industrial university and college that has same corporate body and make legal basis to reorganize general university.
2006.6.7.	Organize relative regulation about rented facilities and land to make special graduate school using as school building and school area.
2007.12.6	Abolish local limits about merging college and industrial university in same administrative district.
2008.9.23	Decide requirement of establishment standard such as entrusted facilities by Higher Education act.
2009.4.21	Reinforce expand finance, improve opportunity and relax criteria of management by attracting private capital about school building and school area.
2010.2.26	Relax standard of judgment for improvement margin of school building and school area to voluntary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y.
2011.2.16	Relax standard of school building/school area and changing location about university in industrial complex for structural reform .
2013.2.15	Relax secure school area requirements to build residential hall for students outside the school area.
2014.2.24	Enables to change location into industrial complex without securing school area.

2004년 03월의 개정에서는 학교시설 중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있던 대학본부·학생회관 및 도서관 등을 교육기본시설로 하고, 대학 내에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정보완이 이루어져 변화하는 대학 환경 변화에 대응하였다.

2013년 02월 개정을 통하여 대학 학생기숙사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지 밖에 학생기숙사를 설치하려는 경우 교지 확보 요건을 완화하였다. 2014년 02월 개정에서는 교사 외에 교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과 산업체 간의 교류·협력을 유도하였다.

이상과 같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중 대학시설과 관련하여 개정된 연혁과 주요 내용은 Table 5와 같다.

2.2 대학시설 변화내용 및 요인

1)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

2010년 이후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2030년에는 35.1%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감소추계가 가장 큰 학령인구는 고등학생으로 2010년 2,069천명에서 1,175명으로 감소하여 거의 1/2 이상(43.2%)가 축소될 예정이다(통계청). 저출산 영향으로 인한 대학 입학 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수, 재학생수 및 학과 수 등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의 주된 변화는 교육기본시설보다는 지원시설과 연구시설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이후 대학의 경우 다른 고등교육기관과 비교했을 때, 대학수의 증가, 졸업정원제 실시 및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 등과 함께 연도별 입학자의 수도 대체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¹⁾.

Table 6. Annual(2000-2014) changes in university incoming students. (measurement: people)

division	2000	2005	2010	2014
general university	321,399	326,284	358,511	363,655
university of education	5,075	6,188	4,862	38,668
industrial university	33,240	28,197	17,572	3,281
graduate school	94,079	108,255	126,958	127,757
college	318,135	251,283	249,144	221,750
extra	47,851	48,827	60,178	70,931
total	819,779	769,034	817,225	826,042

reference : Ministry of Education(2000~2014), education statistical year book

1) 김왕준외 1명, 국내대학의 학과변천과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 pp.32-37.

2)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변화

입학정원의 계열별 배분은 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다음 표는 1971년에서 2014년의 사이의 기간 동안 계열별로 입학정원의 추이를 볼 수 있다.

각 계열의 입학정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인문계열은 11.1%에서 13.1%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사회계열도 18.7%에서 25.7%로 구성비 비율이 증가하였다. 반면 교육계열의 구성비는 12.5%에서 4.8%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예체능계열은 7.1%에서 12.2%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의 구성비는 23.2%에서 25.1%로 소폭 증가한 반면 의약계열은 7.6%에서 6.5%, 자연계열은 19.8%에서 12.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Development of changes in entrance quota by department of entrance quota. (1971-2014)

division		1971	1981	1990	2000	2010	2014
humanities	quota	4,350	31,109	30,435	47,732	47,255	44,463
	ratio	11.1	16.6	15.5	15.2	14.4	13.1
society	quota	7,330	49,688	49,615	80,060	86,505	87,417
	ratio	18.7	26.5	25.2	25.5	26.4	25.7
education	quota	4,890	23,816	3,400	13,188	16,150	16,225
	ratio	12.5	12.7	1.7	4.2	4.9	4.8
engineering	quota	9,100	36,570	79,830	83,599	77,328	85,319
	ratio	23.2	19.5	40.6	26.6	23.6	25.1
natural science	quota	7,745	28,858	-	47,060	42,985	43,303
	ratio	19.8	15.4	-	15.0	13.1	12.7
medical	quota	2,980	7,281	7,275	10,613	16,266	22,242
	ratio	7.6	3.9	3.7	3.4	5.0	6.5
physical	quota	2,785	9,896	15,995	35,158	41,135	41,572
	ratio	7.1	5.3	8.1	10.2	12.6	12.2
total	quota	39,180	187,218	196,550	314,410	327,624	340,541
	ratio	100	100	100	100	100	100

3) 교지 및 교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

기존의 대학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이버대학²⁾, 사내대학, 산업단지캠퍼스³⁾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생겨나고 있으며, 각 대학별마다 요구하는 교지 및 교사 구성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사이버대학의 경우 모두 2014년 기준 2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내대학은 총 8개(2015년)가 운영되고 있다.

- 2)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학칙이 정하는 과정 이수 시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 수여)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근거한 고등교육기관
- 3) 산업단지 캠퍼스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3.11.29., 교육부고시 제2013-6호)에 규정하고 있다.

4) 대학시설공간의 새로운 경향

최근 대학시설은 교수, 학습 및 연구기능에서 벗어나 기숙사, 휴게공간, 판매시설 등 캠퍼스 생활과 관련된 일상 공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대학경쟁력강화 정책에 따라 연구시설의 필요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시설은 연구용실험실, 대학원실, 연구소 등이 포함되어지며, 각 대학에서는 국책사업 유치나 산학연구활동 등의 강화를 위해 연구소와 교수 개별 연구소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연구소와 사업단 등의 운영을 위한 공간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수도권 혹은 대규모 학교 위주로 설립되고 있어 대학 간 연구 환경과 산학 협력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5) 대학시설공간의 개방화

대학시설의 개방화는 지역사회로의 시설개방, 산학협력 시설로의 활용, 대학 간 시설 공유, 대학시설 사업의 민간 자본의 참여 등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대학설립 운영규정의 개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이와 같은 대학시설 개방화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사업체, 금융기관 및 개인 등이 대학부지내에 건축물을 짓고 소유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캠퍼스 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나 체육관 등 복지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이 가능해 졌다.

이러한 대학시설의 개방화는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 공유하는 복합시설의 건립이 가능해 졌고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으로 연계되고 있다.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 내에 들어선 이화캠퍼스복합단지(Ewha Campus Complex) 등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시설공간의 개방화는 산학협력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대학캠퍼스 내 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관내에 가족 기업, 산학협력 업체들이 속속 입주하여 대학 학문의 실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6) 대학시설 사업의 민간 자본의 참여

대학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기숙사 확충사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BTL(Build-Transfer- Lease) 사업방식과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방식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국립대학은 BTL 사업 방식이 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벽으로 둘러싼 예전의 캠퍼스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유재산에서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더 두드러지며, 특히 최근에는 설립 투자방식역시 민간자본에 의한 거대

시설의 확보가 이루어져, 대학시설관리 역시 시설의 자산 개념에서 관리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시설은 교수와 학생들의 학습교육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교육 문화 시설로, 산업체를 위한 산학연센터, 창업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협력대학간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 변화하고 있다.

3. 대학시설 확보 면적 분석

3.1 교지 및 교사 확보 현황

4년제 일반대학은 총 189개교이며 사립대학이 154개교, 국립이 34개교, 공립 1개교이다. 2014년도 기준 전국 국립대와 사립대 전체 교지 면적은 99,440,680㎡로 기준면적인 48,439,814㎡에 비해 205.3%에 이르며, 교사면적은 입학정원기준일 경우는 130.4%, 재학생수 기준일 경우는 119.2%를 확보하고 있다⁴⁾.

Table 8. Secure rate of school area and school building area in university. (2014)

division		school area(m ²)		school building area(m ²)	
		entrance quota	students	entrance quota	students
national	standard	11,748,668	13,023,097	5,896,056	6,541,288
	possession	28,813,881	28,813,881	8,869,663	8,869,663
private	standard	36,691,146	40,121,044	18,615,859	20,270,770
	possession	70,626,799	70,626,799	23,095,691	23,095,691
total	standard	48,439,814	53,144,141	24,511,915	26,812,058
	possession	99,440,680	99,440,680	31,965,354	31,965,354
total ratio		205.3%	187.1%	130.4%	119.2%

3.2 대학별 공간확보 현황 분석

1) 일반사항

본 연구의 대학별 공간확보 현황 분석을 위한 조사대상 학교는 국립과 사립의 일반대학으로 한정하였으며, 학교수는 국립 34개교, 사립대 195개교 등 총 229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⁵⁾. 지역별로는 서울 49개교, 인천 6개교, 부산 14개교, 대구 4개교, 광주 9개교, 대전 11개교, 울산 2개교, 강원 9개교, 경기 39개교, 충북 12개교, 경남 11개교, 전북 20개교, 전남 11개교, 제주 2개교이다.

2) 시설 전체면적 현황 분석

국립대학의 시설 전체면적 평균은 교육기본시설 162,589

4) 한국사학진흥재단(2015),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5) 한국사학진흥재단(2014), 국공사립대학 교육용 토지 및 건물 세부현황

㎡, 지원시설 52,689㎡, 연구시설 38,067㎡, 부속시설 29,062㎡, 기타시설 24,195㎡로 전체 연면적은 306,602㎡로 나타났다. 국립대학의 시설별 비율은 교육기본시설 53.0%, 지원시설 17.2%, 연구시설 12.4%, 부속시설 9.5%, 기타시설 7.9%로 교육기본시설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시설 전체면적 평균은 교육기본시설 84,220㎡, 지원시설 26,194㎡, 연구시설 7,778㎡, 부속시설 25,070㎡, 기타시설 9,025㎡로 전체 연면적은 152,324㎡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시설별 비율은 교육기본시설 55.3%, 지원시설 17.2%, 연구시설 5.1%, 부속시설 16.5%, 기타시설 5.9%로 사립대 역시 교육기본시설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립대와 사립대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시설별 비율은 국립과 사립 모두 교육기본시설의 비중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립대는 연구시설이 사립대는 부속시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9. Current state of facilities area in national/private universality.

division	national university		private university		difference in area (national-private)
	number	area	number	area	
	34		195		
		m ² %	m ² %		
educational facilities	162,589	53.0	84,220	55.3	78,370
supporting facilities	52,689	17.2	26,194	17.2	26,495
research facilities	38,067	12.4	7,778	5.1	30,290
attached facilities	29,062	9.5	25,070	16.5	3,992
extra facilities	24,195	7.9	9,025	5.9	15,169
total	306,602	100	152,324	100	154,278

3) 교사면적 구성 현황

국립대의 교사시설면적은 교육기본시설 64.2%, 지원시설 20.8%, 연구시설 15.0%로 교육기본시설이 가장 컸으며,

Table 10. Analysis of school building component ratio.

division	national university		private university		difference in area (national-private)	
	number of school	area	number of school	area		
	34		195			
		m ² %	m ² %			
total ground area	306,602	100	152,324	100	154,278	
building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162,589	53.0	84,220	55.3	78,369
	supporting facilities	52,689	17.2	26,194	17.2	26,495
	research facilities	38,067	12.4	7,778	5.1	30,289
	total	253,345	82.6	118,191	77.6	135,154
attached facilities	29,062	9.5	25,070	16.5	3,992	
extra facilities	24,195	7.9	9,025	5.9	15,169	

사립대는 교육기본시설 71.3%, 지원시설 22.2%, 연구시설 6.6%로 사립대 역시 교육기본시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연구시설 비중이 높았으며, 사립대는 교육기본시설 비중이 국립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교사시설면적 차는 대부분 국립대가 컸고, 특히 교육기본시설의 면적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대학시설기준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시설 기준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 대학 시설담당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크게 대학일반사항, 대학시설의 현황과 여건, 교사 및 교지 만족도, 계열별 면적 및 요구도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문대상 : 국/공립 및 사립대학 시설담당관
- 설문기간 : 2015년 8월 24일 ~ 9월 4일, 10월 5일 ~ 13일(20일간)
- 응답부수 : 국/공립대학 30부(25.4%), 사립대학 88부(74.6%, 일반 : 53(60%), 전문 35(40%)), 총 118부
- 설문방법 : e-mail을 통한 온라인 조사
- 분석방법 : IBM SPSS Statistics 21

4.1 시설현황 및 만족도 분석

1) 교지 확보면적에 대한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교지면적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리커드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매우 만족은 5점, 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집계하였다.

조사 결과 국립대는 평균 3.27, 사립대는 평균 3.82로 집계되었고 전체적으로 3.68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국립대는 보통이 전체의 36.7%로 나타났으며, 사립대는 만족이 38.6%로 집계되었고, 사립대의 만족도가 국립대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Satisfaction of school area.

provision	national university(%)	private university(%)	total(%)
very satisfied	4(13.3)	25(28.4)	29(24.6)
satisfied	8(26.7)	34(38.6)	42(35.6)
neutral	11(36.7)	18(20.5)	29(24.6)
dissatisfied	6(20.0)	10(11.4)	16(13.6)
very dissatisfied	1(3.3)	1(1.1)	2(1.7)
total	30(100)	88(100)	118(100)
average	3.27	3.82	3.68

2) 교사 확보면적에 대한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교사면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립대는 평균 3.03, 사립대 평균 3.70, 전체 3.53로 대체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사립대의 경우 충분한 교사면적을 확보하고 있어 만족함의 응답이 전체의 50%를 보였으며, 국립대의 경우 보통이 36.7%, 불만족이 30.0%로 집계되었다.

사립대의 결과가 국립대에 비하여 만족도 수준이 다소 높게 집계되었으며, 사립대는 대부분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고, 국립대는 대부분 보통 이하의 만족도로 집계되었다. 또한, 앞 절의 교지만족도에 비하여 교사만족도의 결과가 근소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Satisfaction of school building area.

provision	national university(%)	private university(%)	total(%)
very satisfied	3(10.0)	13(14.8)	16(13.6)
satisfied	6(20.0)	44(50.0)	50(42.4)
neutral	11(36.7)	23(26.1)	34(28.8)
dissatisfied	9(30.0)	8(9.1)	17(14.4)
very dissatisfied	1(3.3)	0(0.0)	1(0.8)
total	30(100)	88(100)	118(100)
average	3.03	3.70	3.53

3) 교지 및 교사 확보율에 따른 만족도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의 교지 및 교사 확보율에 따라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는 크게 교지와 교사를 구분하였고 하위에 국립대와 사립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교지확보율에 따른 만족도 차이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한 구간별 평균,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군의 경우 교지확보율 100%미만의 대학 만족도 평균은 2.50, 표준편차는 0.70이며, 교지확보율 100% 이상~500%미만의 대학 만족도 평균은 2.67, 표준편차는 0.58로 나타났다. 교지확보율 500%이상~1000%미만의 대학 만족도 평균은 3.45, 표준편차는 0.96이며, 교지확보율 1000%이상 대학의 교지만족도 평균은 4.00, 표준편차는 1.41로 나타났다. 확보율 구간별 교사 면적 만족도 평균 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은 1.448, 유의확률은 .253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교사확보율 구간별로 전체 대학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립대군의 경우 교지확보율 100%미만의 대학 만족도 평균은 2.90, 표준편차는 0.91이며, 교지확보율 100% 이상~500%미만의 대학 만족도 평균은 3.98, 표준편차는

0.90이다. 교지확보율 500%이상~1000%미만의 대학 만족도 평균은 4.40, 표준편차는 0.89이며, 교지확보율 1000% 이상 대학의 교지만족도 평균은 4.60, 표준편차는 0.51로 나타났다. 확보율 구간별 교사 면적 만족도 평균 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은 11.394,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교사확보율 구간별로 전체 대학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교지확보율이 100%를 넘는 세 구간의 대학집단은 교지확보율 100%미만을 보유한 대학집단에 비해 교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 Difference analysis of satisfaction(ANOVA) conform to secure ratio of school area.

division	secure ratio(%)	M	SD	F	P	Scheffe
national university	more than 1000(a)	4.00	1.41	1.448	.253	a,b,c,d
	100-less than 500(b)	3.45	0.96			
	500-less than 1000(c)	2.67	0.58			
	less than 100(d)	2.50	0.70			
private university	500-less than 1000(a)	4.60	0.51	11.394	.000	d<a,b,c
	more than 1000(b)	4.40	0.89			
	100-less than 500(c)	3.98	0.90			
	less than 100(d)	2.90	0.91			
total	more than 1000(a)	4.50	0.84	8.690	.000	d<a,b
	500-less than 1000(b)	4.15	0.99			
	100-less than 500(c)	3.81	0.95			
	less than 100(d)	2.86	0.89			

다음으로 교사확보율에 따른 만족도 차이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한 구간별 평균,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학교군의 교사확보율 구간별로 평균,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교사확보율 100%미만의 대학 만족도 평균은 2.86, 표준편차는 0.91이며, 교사확보율 100%이상~200%미만의 대학 만족도 평균은 3.00, 표준편차는 0.00이다. 교사확보율 200%이상~300%미만의 대학 만족도 평균은 3.00, 표준편차는 1.23이며, 교사확보율 300%이상 대학의 교사만족도 평균은 5.00, 표준편차는 0.00이다. 확보율 구간별 교사 면적 만족도 평균 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은 3.223, 유의확률은 0.058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교사확보율 구간별로 전체 대학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립대학교군의 교사확보율 구간별로 평균,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교사확보율 100%미만의 대학 만족도 평균은 3.14, 표준편차는 1.06이며, 교사확보율 100%이상~200%미만의 대학 만족도 평균은 3.70, 표준편차는 0.80이다. 교사확보율

200%이상~300%미만의 대학 만족도 평균은 4.00, 표준편차는 0.70이며, 교사확보율 300%이상 대학의 교사만족도 평균은 4.25, 표준편차는 0.95로 나타났다. 확보율 구간별 교사 면적 만족도 평균 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은 1.881, 유의확률은 0.139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교사확보율 구간별로 전체 대학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4. Difference analysis of satisfaction(ANOVA) conform to secure ratio of school building area.

division	secure ratio(%)	M	SD	F	P	Scheffe
national university	more than 300(a)	5.00	0.00	3.223	.058	a,b,c,d
	200~less than 300(c)	3.00	1.23			
	less than 100(d)	3.00	0.00			
	100~less than 200(b)	2.86	0.91			
private university	more than 300(a)	4.25	0.95	1.881	.139	a,b,c,d
	200~less than 300(b)	4.00	0.70			
	100~less than 200(c)	3.70	0.80			
	less than 100(d)	3.14	1.06			
total	more than 300(a)	4.29	0.75	2.113	.103	a,b,c,d
	200~less than 300(c)	3.56	1.23			
	100~less than 200(b)	3.51	0.89			
	less than 100(d)	3.13	0.91			

4.2 대학시설 현황 분석

1) 여유시설 현황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 중 여유 있는 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국립대학에서는 교육기본시설의 여유도가 33.3%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부속시설 30.0%, 연구시설 20.0%, 지원시설이 16.7%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사립대의 경우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교육기본시설이 전체의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지원시설 20.5%, 부속시설 13.6%, 연구시설이 3.4%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상과 같이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모두 교육기본시설의 여유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15. Current state of spare facilities.

provision	national(%)	private (%)	total(%)
basic education facilities	10(33.3)	55(62.5)	65(55.1)
supporting facilities	5(16.7)	18(20.5)	23(19.5)
research facilities	6(20.0)	3(3.4)	9(7.6)
attached facilities	9(30.0)	12(13.6)	21(17.8)
total	30(100)	88(100)	118(100.0)

2) 활용도 현황

각 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 중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영역을 조사한 결과, 국립대학에서 가장 비효율적 운영시설로는 교육기본시설이 전체의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이 26.7%, 지원시설이 3.3%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사립대의 경우 부속시설의 경우가 35.2%로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연구시설(28.4%), 교육기본시설(22.7%), 지원시설(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6. Current state of availability in university.

provision	national(%)	private (%)	total(%)
basic education facilities	13(43.3)	20(22.7)	33(28.0)
supporting facilities	1(3.3)	12(13.6)	13(11.0)
research facilities	8(26.7)	25(28.4)	33(28.0)
attached facilities	8(26.7)	31(35.2)	39(33.1)
total	30(100)	88(100)	118(100.0)

3) 확충 요구 시설 현황

대학시설 중 확충이 필요한 시설을 조사한 결과, 국립대학에서는 학생생활복지공간이 전체의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기본시설이 23.3%, 대외연구협력시설이 20.0%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사립대의 경우 마찬가지로 학생생활복지공간이 전체의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육기본시설이 19.3%, 지역사회시설이 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7. Current state of require expansion facilities in university.

provision	national(%)	private (%)	total(%)
basic education facilities	7(23.3)	17(19.3)	24(20.3)
student life, welfare space	12(40.0)	30(34.1)	42(35.6)
research facilities	1(3.3)	10(11.4)	11(9.3)
research cooperation facility	6(20.0)	13(14.8)	19(16.1)
community facilities	2(6.7)	16(18.2)	18(15.3)
extra facilities	2(6.7)	2(2.3)	4(3.4)
total	30(100.0)	88(100.0)	118(100.0)

4.3 대학시설 기준 적정성 조사 결과

1) 대학시설면적기준 적용 적정성

본 연구에서는 현행 대학시설 면적 기준 규정이 신규 대학설립과 기존 대학의 관리 및 운영에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국립대 및 사립대 모두 현행 기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설립기준은 국가에서 규정하고,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은 대학자체의 규정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Table 18. Propriety of university facilities Area Standard.

provision	national(%)	private (%)	total(%)
current standard	11(36.7)	35(39.8)	46(39.0)
minimum of national standard	9(30.3)	19(21.6)	28(23.7)
establishment - national management - university	10(33.3)	34(38.6)	44(37.3)
total	30(100.0)	88(100.0)	118(100)

2) 교사 기준의 계열 구분의 적정성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는 현행 대학의 교사 기준 면적을 5개 계열(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계열)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국립대군과 사립대군 모두 현행 5대 계열의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9. Propriety of classification in standard school area by department.

provision	national(%)	private(%)	total(%)
expand academic category	7(23.3)	10(11.4)	17(14.4)
reasonable	18(60.6)	61(69.3)	79(66.9)
reduce academic category	5(16.7)	17(19.3)	18(18.6)
total	30(100.0)	88(100.0)	118(100.0)

3) 교사시설 구분 및 향후 요구시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대학시설 규정에서 정하는 교사시설(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의 구분에 대한 적정성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대학군에서 1순위는 세분화하여 추가할 필요 없는 것(국립 60.0%, 사립75.0%, 전체 72.9%)으로 집계되어 현행 기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국립대군에서는 산학협력시설의 추가(23.3%)를 나타냈으며, 사립대군은 산학협력시설(11.4%), 복지시설(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산학협력시설(13.1%), 복지시설(8.4%), 관리행정시설(4.7%)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Table 20. Propriety of classification in standard school area by department and demand facilities.

provision	national(%)	private (%)	total(%)
current standard	18(60.0)	66(75.0)	78(72.9)
welfare facilities	2(6.7)	9(10.2)	9(8.4)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facilities	7(23.3)	10(11.4)	14(13.1)
management facility	3(10.0)	2(2.3)	5(4.7)
housing facility	0(0.0)	0(0.0)	0(0.0)
extra facilities	0(0.0)	1(1.1)	1(0.9)
total	30(100.0)	88(100.0)	118(100.0)

다음으로 향후 대학시설의 변화에 의해 대학시설로 인정되길 요구하는 시설의 구분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국립대군의 경우 판매시설이 전체의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지역주민시설이 23.3%,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이 20.0%로 집계되었다. 사립대군의 경우 근린생활시설(30.7%), 지역주민시설(28.4%), 판매시설(20.5%)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4) 계열별 교사기준면적 적정성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는 교사(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의 기준 면적을 5대 계열별로 학생 1인당 요구면적을 제시하는 현행 규정(Table 2. 참조)의 적정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립대군은 56.7%가 현행기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세부적인 기준 요구가 36.7%로 집계되었다. 사립대군은 국립대군과 마찬가지로 1순위는 현행기준이 적정(61.4%)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부는 포괄적 기준제시하고 대학이 구체적 기준 수립하는 방안이 29.5%로 집계되었다.

또한, 5대 계열(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계열)별 교사기준면적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역시 현재 제시된 면적기준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1. Propriety of school building Area Standard.

provision	national(%)	private (%)	total(%)
current standard	17(56.7)	54(61.4)	71(60.2)
demand standard in detail (department and facilities)	11(36.7)	8(9.1)	19(16.1)
government : suggest comprehensive standard university : establish specific standard	2(6.7)	26(29.5)	18(23.7)
total	30(100)	88(100)	118(100)

5) 향후 대학시설(교사 및 교지) 면적 변화 요구도

본 연구에서는 미래 다양한 사회적·교육적 변화에 따른 대학시설(교사 및 교지) 면적 변화 요구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립대군은 40.0%가 면적확충요구는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고, 33.3%가 큰 변화 없을 것, 다음으로는 26.7%가 면적확충 요구는 줄어들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사립대군의 경우, 면적확충요구가 줄어들 것이다가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는 35.2%, 그리고 점차 확대될 것이다가 21.6%로 나타났다.

본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국립대군은 면적 확충요구가

점차 확대될 것임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로 사립대군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2. Demand variation of expand area by university facilities.

provision	national(%)	private (%)	total(%)
No difference	10(33.3)	31(35.2)	41(34.7)
gradual reduction	8(26.7)	38(43.2)	46(39.0)
Gradual expansion	12(40.0)	19(21.6)	31(26.3)
total	30(100)	88(100)	118(100)

5. 대학시설기준의 적정성 분석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대학시설기준 및 시설현황, 그리고 설문분석을 토대로 대학시설기준에 대한 적정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5.1 교지 및 교사 면적기준의 적정성

현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 및 교사면적은 대학설립운영이 정하는 기준보다 많은 면적을 확보(3.1 교지 및 교사확보현황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학마다 면적 과부족에 대한 의견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 계열별 1인당 기준 면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1 참조).

따라서 현행 교지 및 교사 면적 기준을 수정·변경하기 보다는 교사면적에 복지시설, 산학협력시설, 지원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는 시설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기를 유도하며, 교사의 기준면적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고, 기존 대학시설의 잉여공간을 학생후생복지시설, 산학연구시설과 지역사회 사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2 교사시설 구분 및 범위의 적정성

1) 교사시설 구분의 확대

현행 규정에서는 교사를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등으로 구분(Table 1 참조)하고 있으나, 대학시설에 대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현재의 시설구분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규정 본문에서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로 구분되던 시설을 교사로 일원화하고, 교사의 세부 분류는 규정의 [별표 2]를 Table 23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한다.

Table 23. Division of school building. (Para. 1 of Art. 4 of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university)

division	facilities division	name of facilities
school building	education facilities	classroom, laboratory, professor laboratory
	research facilities	professor laboratory, graduate student lab, national policy research lab, attached research lab, joint experiment lab, practice factory ect.
	supporting facilities	library, physical training facilities, information and computing institute, meeting facilities, exhibition facilities, museum, ROTC ect.
	welfare facilities	student government facilities, health care center, sakes facilities, dining facilities, student housing, staff housing, university president's mansion ect.
	administration facilities	department facilities, college facilities, university facilities, graduate school facilities ect.
	cooperation facilities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facilities, venture business facilities, school business facilities, lifelong study facilities ect.
	public facilities	circulation area, space of service, space for facilities ect.
attached facilities	attached facilities	attached school, production facilities, training facilities, facilities of hospital in affiliation ect.
	extra facilities	suburban facilities, commercial facilities.

note: Type of facilities that can construct by university or faculty as necessary shall be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service separately.

2) 교사범위 확대

최근 대학연구는 실용화와 기술이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산학협력 혹은 산업체 연계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의 연구시설도 교지를 벗어나 연구단지, 산업단지(산업단지 캠퍼스 설립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요구와 교육환경의 변화 요구에 의하여 대학 기숙사의 질적, 양적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는 교지 밖의 연구시설과 기숙사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로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는 정하고 있어, 시설확충의 여건을 위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 활동과 거주여건을 향상시키도록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지 밖의 연구시설과 기숙사에 대한 조건(학교시설결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6)

3) 대학시설의 산업체 사용 면적 완화 필요성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산업체 등이 이용할 수

6) 관련규정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3항(교지 밖 연구시설) 및 제5조 제4항(학생기숙사)

있는 교사면적을 교사 기준면적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대학 구조개혁을 통한 정원감축으로 교사 기준면적 감소시 산업체 이용 교사면적도 감소하게 되어 여유시설이 발생해도 산업체가 이용하는 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이 학생정원 감축 등으로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초과하여 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산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제한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시설관련 규정들을 검토한 후 향후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교육 환경과 시설 방안을 모색하여 대학시설과 관련된 법적 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대학시설기준, 공간관리규정, 국·사립 대학의 시설현황 등을 분석하고 약 120개 대학에 대학시설 만족도와 시설기준의 적정성을 설문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의 학문분류와 시설 분류체계의 타당성 그리고 교사 및 교지 기준면적의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시설 면적기준의 변화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등의 환경 변화는 대학수, 재학생수 및 학과수 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대학시설은 교육기본시설보다는 지원 시설과 연구시설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복지 및 문화시설의 필요성, 다양한 연구 및 산학협력시설들의 요구와 같이 대학시설의 면적에 (+)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교육 정보화에 따른 연구 및 교육 단위 공간의 축소 등과 같은 (-)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같이 요구면적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 요인과 감소요인이 서로 병존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도 볼 수 있듯이 국립대와 사립대의 의견이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한 결과, 현 면적기준을 확대 혹은 축소하기보다는 시설기준을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함이 현시점에서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학시설 기준면적의 적정성 검토는 다음과 같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정하는 교사면적 기준을 국·사립대학의 시설 확보율, 대학시설 만족도 및 기준 적정성에 대

한 설문조사, 국립대학의 공간활용기준 대비 면적 확보율, 그리고 외국대학의 시설기준과 비교한 결과, 현 교사 기준 면적이 과대하거나 혹은 과소하다고 할 수 없으며 현재의 기준으로도 향후 시설 요구에 충분히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계열별 시설기준 체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학부/과 및 전공의 계열은 인문·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계열을 포함한 5대 계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계열별로 소계열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직업 및 산업구조 변화, 학문간 융합 등을 고등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동일 계열이라 할지라도 학문과 학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의 학문 분류체계로 계열별 시설면적 기준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최근 연구되고 있는 학부·과 및 전공 표준 분류체계들을 준용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 분류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규정에 교사로 정해진 대학시설들을 보다 다양화하고 포괄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시설 운영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교사시설에 후생복지시설, 산학협력시설, 평생학습시설 등 지역주민시설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여 발생하는 잉여공간들을 새로운 대학시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복지시설, 산업체와 지역사회 시설로 융통성 있게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시설 구분과 범위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규정에서는 교사를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대학시설에 대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지밖의 연구시설 및 기숙사에 대한 조건(학교시설결정)을 삭제함으로써 산학협력 연구의 활성화와 생활여건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를 교육·연구·지원·복지·행정·대외협력·공용시설로 분류하고, 최근 시설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복지시설과 대외협력시설을 교사에 포함시켜 대학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이 정원 감축 등으로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여 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산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제한(교사 기준면적의 10% 이내)을 완화하여 산학협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시설 기준의 적정성 검토에 있어 시설 운영 및 관리 담당관들에게만 협의회, 설문조사, 연구발표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대학시설을 사용하는 학생, 교수의 의견과 만족도 조사가 미흡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학문별 대표 집필진이 모여 융합연구를 행함으로써 대학 내 모든 구성원들의 요구와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여 보다 표준화되고 객관화된 연구가 추진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1. The Higher Education Act, 2015
2. Universit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Regulation, 2015
3. Ministry of Education,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Space and Facilities in University, 2007
4. Ministry of Education, The Study on the Goal-Setting of Financial Investment in the Facilitie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2007
5. Kore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Educational land and buildings Specific status for University, 2014
6. Cho, Chang-Hee etc.,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Space and Facilities in National Universities, Education Facilities, 15(5), p.30, 2008
7. Ryu, Soo-Hoon etc., A Study on the Facility Management Method through Actual Condition of Space Management, Education Facilities, 16(4), p.79, 2009
8. Lee, Hwa-Ryoung etc., A Survey Study on Space Use and Management at National Universities, Education Facilities, 21(3), p.3, 2014
9. Ryu, Soo-Hoon etc.,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Assessment Category and Items for University Facility Management, Education Facilities, 15(6), pp.22~30, 2008
10. Kren L, & Cyros., Postsecondary Education Facilities Inventory and Classification Manual(FICM), 2006
11. TEFMA, Space Planning Guidelines, 2009
12. SMG., Review of space norms, 2006, SMG, Managing space: a review of English further education and HE overseas, 2009

접수 2016. 4. 11
1차 심사완료 2016. 4. 26
게재확정 2016. 5. 13